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1-69
----------	---------

발의연월일 : 2021년 7월 21일

발 의 자 : 이종숙, 경기문, 김현희, 이충숙  
김용원, 송영섭, 황동현, 신낙형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상위법인 「발명진흥법」의 개정사항 및 용어의 정의를 반영하고, 정부부처의 명칭을 현행화하여 조례의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로 변경(제명)
- 나. 대상을 “공무원”에서 “공무원등”으로 확대(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6조)
- 다. “자유발명”을 “개인발명”으로 용어 변경(안 제2조, 안 제23조, 안 제27조)
- 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변경(안 제3조)
- 마.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현행화(안 제30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발명진흥법」 제2조, 제10조 및 제15조
  - 2) 「정부조직법」 제26조

나. 협조부서: 기획예산과

다. 입법예고: 2021. 8. 17. ~ 8. 22.

결과: 의견 없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강서구 소속 공무원”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속 공무원 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한다)”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구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의”를 “공무원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자유발명””을 ““개인발명””으로, 같은 호 및 제3호 중 “공무원”을 각각 “공무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서울특별시강서구(이하 “구”라 한다)명의”를 “구의 명의”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승계한다”를 “승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을 “공동”으로, “승계한다”를 “승계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 중 “공무원”을 “공무원등”으로 한다.

제20조 중 “서울특별시강서구”를 “서울특별시 강서구”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한 직무발명의 “구””를 “다른 직무발명에 대한 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의한 자유발명의 “구””를 “다른 개인발명에 대한 구”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자유발명의 승계)”를 “(개인발명의 승계)”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 중 “자유발명”을 “개인발명”으로 한다.

제30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u> <u>직무발명 보상 조례</u></p>	<p><u>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등</u> <u>직무발명 보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u>서울특별시강서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u>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u>각호</u>와 같다.</p> <p>1. “<u>직무발명</u>”이라 함은 <u>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u>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u>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u>를 말한다.</p> <p>2. “<u>자유발명</u>”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이외의</p>	<p>제1조(목적) ----- ----- ----- <u>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속 공무원 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u>----- ----- ----- ----- ----- -----</p> <p>제2조(정의) ----- ----- <u>각 호</u>----- ----- -----</p> <p>1. ----- <u>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구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u>----- <u>공무원 등의</u> ----- -----</p> <p>2. “<u>개인발명</u>”----- -----</p>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구유특허권”이라함은 이 조 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이하 “구”라 한다)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5.·6. (생략)

제3조(권리의 구 승계) ①구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②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6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심의회의 설치) 직무발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공무원등-----.

3. -----  
-- 공무원등-----.

4. -----  
----- 구의 명의-----  
-----  
-----.

5.·6. (현행과 같음)

제3조(권리의 구 승계) ①-----  
-----  
-----  
-----  
-----  
-- 승계할 수 있다.

②-----  
----- 공동-----  
-----  
----- 승계할 수 있다.

제6조(발명의 신고) 공무원등-----  
-----  
-----  
-----.

제20조(심의회의 설치) -----  
-----  
----- 서울특별시 강서구  
-----  
-----.

제23조(심의회회의 심의사항) 심의 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 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 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3. ~ 5. (생략)

제27조(자유발명의 승계) ① 자유 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② (생략)

제30조(직무발명상황 보고) 구청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여부 및 그 내용 기타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심의회회의 심의사항) ----  
----- 각 호-----  
----.

1. ----- 따른 직무 발명에 대한 구-----  
-----

2. ----- 따른 개인 발명에 대한 구-----  
-----

3. ~ 5. (현행과 같음)

제27조(개인발명의 승계) ① 개인 발명-----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직무발명상황 보고) ----  
-----  
-----  
----- 산업통상자원부령-----  
-----.

□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27., 2010. 6. 8., 2013. 7. 30., 2015. 5. 18.>

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 ①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30.>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21. 4. 20.>

③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 30., 2010. 1. 27.> [시행일 : 2021. 10. 21.] 제10조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

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7. 30.>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 30.>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3. 7. 30.>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7. 30.>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7. 30.>

⑦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7. 30., 2021. 4. 20.>

[시행일 : 2021. 10. 21.] 제15조

## □ 「정부조직법」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18. 중소벤처기업부